

환경부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있는 석면질병의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7842호, 2021. 1. 5. 개정,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유증 입증을 위한 서류 제출(안 제11조제1항)

유효기간 갱신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후유증’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애 검사 등의 서류 제출

나. 요양급여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안 제17조)

요양급여 지급기간이 석면질병 진단일까지 소급하여 지급됨에 따라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다. 석면피해구제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의3)

석면피해인정 신청·유효기간,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심사 청구 제기 및 심리 결정, 석면건강관리수첩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업무수행 내용 명시

라.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안 제34조제2항제4호)

석면환정보건센터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실적 요건을 삭제하여 신규 의료기관의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여 기회균등 실현

마. 법률 용어 등 정비

“장제·장의”를 “장례”로,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조항 등의 오류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를 “사람에게 문서로 통보해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여야”를 각각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동맥혈 산소 분압 검사 서류 등 이에 준하는 서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를 “받으려는 사람(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7조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한정하며 한 차례만 제출한다)

제18조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장의비 지급 신청)”을 “(장례비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장의비 지급신청서”를 “장례비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제”를 “장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을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를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를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로,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을 “않은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를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아니하면”을 “않으면”으로, “독촉하여야”를 “독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5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자가 부담하여야”를 “사람이 부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2항제3호”를 “법 제4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원은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기 및 심리·결정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 및 심리·재결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5조제1호 중 “질병”을 “병”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되어야”를 “기재돼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같은 항 중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자임”을 “사람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수수료 없음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애 검사 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및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등 이에 준하는 서류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수수료 없음
	2.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제명 “장의비 지급신청서”를 “장례비 지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서명란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장제”를 “장례”로 하며, 같은 뒤쪽 중 “장의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제명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서명란 중 “특별장의비”를 “특별장례비”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	수수료 없 음
------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첨부서류란 중 제4호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 정(이하 “석면피해인정”이라 한 다)을 받으려는 <u>자는</u> 별지 제1 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u>신청하여야</u> 한다.	제3조(석면피해인정 신청 등) --- ----- ----- ----- <u>사람은</u> ----- ----- ----- ----- ----- ----- <u>신청해야</u>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 인정을 받으려는 <u>자가</u>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 는지를 <u>확인하여야</u> 한다.	제4조(석면피해인정 통지 등) ① ----- ----- ----- ----- ----- ----- ----- <u>사람이</u> ----- ----- ----- ----- ----- ----- <u>확인해야</u> -----.
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 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② ----- ----- ----- ----- ----- -----

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이하 “석면피해의료수첩”이라 한다)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이하 “사망신고의무자”라 한다)가 반환하여야 한다.

----- 사람
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

제5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 -----

----- 사람 -----
----- 교부해야 -----.

----- 해야 -----.

제9조(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 -----

----- 반환
해야 -----.

----- 반환해야 -----
-----.

1. ~ 4. (생략)

5.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이하 “석면피해검사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 영

1. ~ 4. (현행과 같음)

5. -----
-- 사람이 -----

제10조(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 ① -----

-- 사람은 -----

----- 신청해야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지급해야 ---. -----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에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 사람에 -----
---.

제11조(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 ① -----

----- 사람은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신청해야 -----
--.

1. 석면피해의료수첩 사본

2.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폐기능 장애 검사서류(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폐용적 그래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동맥혈 산소분압 검사 서류 등 이에 준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

----- 받으려는 사람은 -----

제9호서식의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양급여 지급신청서에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청해야

1. ~ 5. (현행과 같음)

② -----

--- 받으려는 사람(사망한 사
람을 포함한다)이 -----

--- 확인해야 -----.

제17조(요양급여 지급 신청) -----

-- 받으려는 사람은 -----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 신청해야 -----.

1. 진찰·검사 관련 비용 영수증

2. 진단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
단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에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요양생
 활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11호서식의 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를 그 주소지를 관할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장의비 지급 신청) 법 제1
 6조제1항에 따라 장의비를 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장의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
 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
 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2. (생 략)
3. 신청인이 피인정자의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류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
 의비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
 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
 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신청서

한정하며 한 차례만 제출한
 다)

제18조(요양생활수당 지급 신청)

 ----- 받으려는 사람은 -----

 -- 신청해야 -----.

제19조(장례비 지급 신청) -----
 ----- 장례비를 받으
 려는 사람은 -----
 -- 장례비 지급신청서-----

 --- 신청해야 -----.

- 1.·2. (현행과 같음)
3. ----- 장례-----

 --

제20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
 례비 지급 신청) -----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

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미지급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주소

----- 신청해야 -----.

제21조(구제급여조정금 지급 신청) -----
----- 받으려는 사람은 -----

----- 신청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 ① -----

----- 사람 -----
-----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
----- 않은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

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일부를 지급중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
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날까지 요양급여는 지급
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은
일할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④ (생략)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삭제

② 기술원의 원장은 구제급여를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
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자에
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기술원의 원장은 제2항에 따
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
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

----- 청구해야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전부 또는 일부-----

--- 않고, 요양생활수당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
--- 사람이 -----

----- 사람
에게 -----.

③ -----
----- 사람이 -----

----- 않
으면 -----

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 중 영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제급여 부담액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심사청구)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재심사청구)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필요성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단서·검사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갖추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

--- 독촉해야 -----.

⑤ ----- 법 제21조제1항-----

----- 지급해야 -----.

제25조(심사청구) -----
----- 사람은 -----

신청해야 -----.

제26조(재심사청구) -----
----- 사람 -----
은 -----

----- 신청해야 -----
--.

제31조(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 ① -----

----- 사람은 -----

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삭제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를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인정자 또는 영 제5조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2. (생략)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생략)

----- 요청해야 -----.

②·③ (현행과 같음)

⑤ -----

----- 사람-----
-----.

⑥ -----

----- 사람이 부담해야 -----.

----- 사람에 -----

-----.

제33조(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법 제47조제2항제4호-----

-----.

1. 2. (현행과 같음)

제34조(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지정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4. 최근 3년간 석면질병 진단 실적 1부

③ ~ ⑤ (생략)

<신 설>

② -----

-- 제출해야 ----.

1. ~ 3. (현행과 같음)

<작 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원은 법 제47
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구
제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석면피해인
정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석면피해인
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업
무

3.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유족 인정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업무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대상자) 법 제48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
2. (생략)

5. 법 제18조에 따른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기 및 심리·결정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8조 및 제41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의 제기 및 심리·재결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44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업무
9.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석면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 등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5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 대상자) -----

-----.

1. -----

----- 병 -----

2. (현행과 같음)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① (생 략)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소

3·4. (생 략)

5. 그 밖에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의 진료·검사 내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석면건강관

제37조(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사람에 대한 건강검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이 -----

----- 제시해야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내용·서식) ① -----
기재돼야 -----
-----.

1. (현행과 같음)

2. -----
-- 사람-----

3·4. (현행과 같음)

5. -----
-----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 ① -----
----- 사람이 -----

리수첩 재교부신청서를 기술원
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
다.

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
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
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
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
하여야 한다.

--.

② -----
-- 사람이 -----

----- 폐기
해야 ----.